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184
----------	-------

발의연월일 : 2026. 7. 27.

발 의 자 : 조경태 · 김태호 · 고동진
안철수 · 한지아 · 신성범
박성훈 · 엄태영 · 박정하
정성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축산업의 범위를 종축업 · 부화업 · 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으로 구분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 · 알 · 꿀을 생산하는 업을 가축사육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재 전 세계 독감백신의 90% 이상이 계란을 활용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행법은 백신 등 필수약품의 원료 공급을 목적으로 계란을 생산하는 가축사육업에 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고, 하위법령의 산란계 사육업 범주 내에서 관리하고 있어 해당 업종의 법적 지위와 관리체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독감 확산, 계란 가격 급등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백신 생산에 필요한 원료 수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 생산체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백신 등의 제조 원료용 계란을 생산하는 “백신산란계사육업”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축산업 허가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해당 사육시설에 대하여는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위탁 등 백신의 안전성 및 품질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업종의 안정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22조 및 제25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정액등처리업”을 “정액등처리업·백신산란계사육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백신산란계사육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백신 또는 필수 의약품의 제조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여 그 유정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제22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백신산란계사육업

6의2. 백신산란계사육업의 경우 백신 제조용 유정란의 품질 확보를 위한 혈청검사 및 질병검사 관리 체계(전문기관 위탁을 포함한다)를 갖추는 것

제25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22조제2항제6호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3. (생략)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 <u>정액등처리업</u>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 7. (생략) <u><신설></u> 8. ~ 10의2. (생략)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	제2조(정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u>정액등처리업·백신산란계사육업</u> ----- --. 5. ~ 7. (현행과 같음) <u>7의2. “백신산란계사육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백신 또는 필수약품의 제조 원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닭을 사육하여 그 유정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u> 8. ~ 10의2. (현행과 같음)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 ----- ----- ----- ----- ----- -----. -----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3. (생 략)

<신 설>

4. (생 략)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③ ~ ⑧ (생 략)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백신산란계사육업

4. (현행과 같음)

② -----

-----.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백신산란계사육업의 경우

백신 제조용 유정란의 품질
확보를 위한 혈청검사 및 질병
검사 관리 체계(전문기관
위탁을 포함한다)를 갖출 것

7.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

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 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10. (생 략) ② ~ ⑤ (생 략)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제22조제2항제6호의2에</u> <u>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u> <u>경우</u> 5. ~ 10.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	--